

**Vol. 12**

2025.12. 16.

#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17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 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 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 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소영은 전임 yesoh@hjcustoms.co.kr

##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 예고
- III. 조세심판사례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 I. 법령 개정사항

### 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 영업자가 견본품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소량의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수입식품 등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은 수입신고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이 유사한 법률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되는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의 위생용품 편입으로 위생용품의 수입량이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분야에서 적용 중인 전자심사 체계를 도입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2) 시행일

25.11.11.

---

## I. 법령 개정사항

###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함.

#### (2) 시행일

25.11.01.

---

## I. 법령 개정사항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축소함.

#### (2) 시행일

25.11.01.

---

## I. 법령 개정사항

### 4.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 51 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厚板)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

#### (2) 시행일

25.11.24.

## II. 입안예고

###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입안 계획

#### (1) 입안이유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따라 국내로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철강재 수입시 HS 코드, 원산지 오기 등 부정확한 신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정확한 수입 데이터는 단순히 세관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무역협정 이행, 불공정 수입재 대응 등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또한, 최근 수입 철강재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로,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확정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및 우회 수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필요함.

#### (2) 주요 내용

철강 관련 품목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시행령 제 16 조)

- 1) 품질검사증명서는 철강 제품의 원산지, 제조자, 물리적 특성 등 주요 품질사항을명기하여, 제품 출고시 발행되는 서류
- 2) 시행령 제 16 조에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품질검사증명서제출 의무화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3) 수입업자의 품질검사증명서 외 추가 서류 제출 부담 미발생, 동 시행령 개정안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 철강재 확정 등을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등도 개정할 예정

#### (3) 의견수렴기간

25.12.29.

---

## II. 입안예고

###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2024년 5월 29일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에 추가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에 추가(제 24 조 제 1 항 제 23 호)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완화해야하는 대상국가에 추가 (제 24 조 제 16 항 제 16 호)

## II. 입안예고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 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전기 제어용 보드 등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일치시키는 등 일부 협정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에콰도르의 경우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을 정함.

-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부과 금지기간 등을 정함.
- 3)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물품에

- 4)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추가함.
- 5)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 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 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무역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계약상대국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경우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의 경우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마. 협정과 의 정합성 정비

- 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잘못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해당 협정에 따라 명확히 함.
- 2)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명확히 함.
- 3) 「관세법」 제 65 조제 1 항에 따른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물품을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명확히 함.
- 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전기제어용 보드 등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과 일치시킴.

II. 입안예고

**4.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국가 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중 동일한 제조단위 제품에 대한 출하승인 업무의 국제조화와 일부 검정시험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아울러 코로나 19 의 위기단계 해제 이후에도 접종시기에 맞춰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하 승인 대상을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일제조단위 품목 품질 동등성 인정(안 제 4 조, 제 11 조, 제 13 조)

최초 신청 제조번호에 대해서는 검정을 실시하고, 동일 원액으로 충전해 직접 용기 포장까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최초 품목에 대한 검정결과로 같음

나. 위해도 평가 후 검정기준 명확화(안 제 10 조, 제 11 조)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약사법」 제 2 조제 19 호의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제외)의 위해도 단계 평가 및 재검토 후 검정항목을 명확히 개선

다. 검정시험 대상 선정방식 정비(안 제 11 조)

국가출하승인시 검정시험 대상 제조번호 선정에 있어 일부 품목은 '임의'로 선정되며, 일부 품목은 주기적 검정으로 선정되어 객관적으로 시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선정 방식으로 정비

라. 신속 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확대(안 제 12 조)

코로나 19 등 위기상황이 해제되어도 접종일정에 맞춰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대상을 확대함

---

## II. 입안예고

### 5.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오남용우려의약품 중 최근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707 호, 2025.8.12. 일부 개정)된 "에토미데이트 함유 제제"를 삭제하고 자 함(안 제 2 조제 17 호 삭제)

## II. 입안예고

###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각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페루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각 협정에 따라 수출자로 한정하고,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역내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일부 협정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을 마련함.

- 1)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각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부가 발급한 것과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며,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산업부 또는 관세청이 발급한 것과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는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는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3)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에콰도르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인쇄 광고물 등을 포함시킴.

나.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가함.

다. 협정과 의 정합성 정비

- 1) 페루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출자로 한정하여 각 협정과 일치시킴.
- 2)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에 필리핀을 추가하여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함.
- 3)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역내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역내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용견품 및 인쇄광고물을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도록 함.

(3) 의견수렴기간

25.12.18.

## II. 입안예고

### 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도 수입식품 관련 영업을 위한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조건부 수입 검사 요건을 확대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가 광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안전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도록 안내 문구를 그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수입식품등 영업등록·변경 신청한 영업장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유 사무실처럼 같은 시설 또는 장소를 여러 사람이나 법인이 독립된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계약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2) 의견수렴기간

25.12.29.

II. 입안예고

8.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관세법」제 51 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프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프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경우 2024년 12월 18일부터 덤프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프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관세법 시행령」 제 98 조제 1 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 2831.10.1000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프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12.87%~33.97%로 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진해(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나. 진하이(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	12.87
	2. 마오밍(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97
	3. 그 밖의 공급자	33.97

비고: 제 3 호의 공급자가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 3 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프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II. 입안예고

### 9.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관세법」 제 51 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 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관세법 시행령」 제 98 조제 1 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 4410.11.1000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다만, 표면을 피복한 파티클보드는 포함되지 않음.

나. 적용기간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13.03~15.18%로 함.

## II. 입안예고

### 1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 가. 산업부, 국토부 등 다른 정부기관 인증제도\*와의 상호인정을 위한 가점부여 등 근거 규정 신설
- 나. 국회 등의 AEO 업체 법령위반 시 제재조치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혜택 정지 사유 확대 및 취소 후 재신청 기간 등 규정 정비
- 다. 위탁사업 수행 관련 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
- 라. 산재되어 있는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규정을 통합조문으로 구체화, 인용·준용 조문의 명확화, 혜택의 현행화 등 규정 정비

#### (2) 주요 내용

- 가. 정부기관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 근거 신설(§ 4④, § 6①, 별표 1)
- 나. 공인기준 평가 운영 관련 규정의 명확화
- 다.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규정 정비(§ 7, § 9 조의 2, § 19①)
- 라. 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규정 정비(별표 4)
- 마. 공인 및 갱신 서류심사 기간 통일(§ 19⑤)
- 바. AEO 업체의 법규위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정 보완
- 사.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정비(별표 2)

## II. 입안예고

### 1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 서류제출 대상, 통관지 제한, 해체용 선박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속 통관 및 국내 산업 지원
- 외국인 납세의무자 검증 강화로 허위신고 행위를 차단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거래 유형 신설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
- 임시개청 신청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관인 변경
- 관세분야 고시 통·폐합에 따른 고시 명칭 변경, 정부조직 개편 등 반영

#### (2) 주요 내용

- 필수적 서류제출 제외대상확대(제 13 조)

해외에서 재수입면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물품 반품 시 여러 반품 건을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P/L(Paperless)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감면심사에 필수 구비서류가 없고 수출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되어 심사 실익이 적은 물품을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제 15 조)

디지털 무역 확산으로 전자문서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첨부서류 종이서류 제출 대상을 축소하여 기업부담 완화

- 해체용 소형선박 수입통관 절차 개선(제 83 조, 제 85 조)

2 천톤 미만의 해체용 선박에 대해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 및 분리과세 대상물품(원상태 사용 예정물품)의 수리 후 60 일 이내 추가 신고를 허용하여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 지원

-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제 95 조)

「정부조직법」개정('25.10.1.)에 따라 부처명칭 변경(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제한 예외 신설(제 106 조)

최초 수입신고 세관에서 수입물품을 수리전 분석한 결과 특정세관에서 통관해야 되는 특정물품으로 회보받은 경우 당초 세관에서 승인을 받고 수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 납부영수증 서식 정비(별지 5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납부서(수납기관용))

납세자가 체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영수증에 '최초 납부기한'을 표기하고 '발행일자'를 '고지일자'로 명확화

□ 즉시반출업체 지정 신청시 첨부서류 정비(별지 22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만원인이 즉시반출업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첨부서류 근거 법령 및 첨부서류 종류 정정

□ 임시개청 신청 근거 명확화(별지 28 임시개청 신청(통보)서)

임시개청 신청 시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등 근거번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명확히 하고 임시개청 문서번호체계 정비

□ 관세분야 고시 통·폐합에 따른 명칭 정비 등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 호, '24.4.25.)에 따라 통·폐합된 고시에 맞게 명칭을 정비

## II. 입안예고

### 12.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부터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받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경우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고시 중 유사 내용을 통합 배치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중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생략하는 규정 신설[안 제 5 조제 6 항]

- 1) 우수수입업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개선 필요
- 2)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실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관련 유사 규정 통합 배치 및 문구 정비[안 제 6 조제 3 항, 제 7 조, 제 8 조제 5 항, 제 9 조제 3 항]

- 1) 기존 고시에서 유사한 내용이 분산 배치 및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필요
- 2) 등록증의 반납 요건, 유효기간 연장 조건, 준수사항 유예조건 및 우대조치 일시 중단 조건 등 분산 배치된 관련 조항들의 통합 배치 및 문구 정비

### Ⅲ. 조세심판사례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2.5.13. 000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고 한다)로부터 위스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송품장상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처분청은 2023년 3월경부터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진행한 후, 세관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송품장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관세 등 제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4.11.5. 검찰에 청구법인 등을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송치)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25.2.27.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하였음.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출송품장의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2024.11.27.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경정 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에는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계약 등 거래관계가 없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상 일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하나 이 건 원산지증명서상 서명은 이미지 파일을 반복하여 사용한 것인 등 유효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3) 결정일

2025.10.01 (조심2025관0029)

### Ⅲ. 조세심판사례

##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000에 설립한 생산법인 A(이하 "A 법인"이라 한다)가 생산한 제품 중 일부를 국내로 수입하고 있고, 2018년 12월 국세청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A 법인과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에 대한 위험성 예방 목적으로 한-000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이하 "APA"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2023.3.28. 청구법인에게 2020년~2023년 기간 동안의 과세 범위에 대한 승인 결과를 통보하였음.

나. 처분청은 2024.4.15.부터 2024.5.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에게 위 APA 승인에 따른 A 법인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목표 영업이익률을 재검토하여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음.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4.10.15. 수입신고번호 9건(이하 "쟁점수입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음.

라. 청구법인은 2025.1.7. 위 수정신고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0. 이를 거부하였음.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시 목표 영업이익율이 독립기간 간 일반적 수준인지 검토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자체 산정가격만을 신뢰한 채 이를 소홀히 하였고 APA 승인을 통해 과거 목표 영업이익율이 낮았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입가격에 반영않다가 처분청의 통관적법성 심사시에 이르러 안내를 받아 수정신고하는 등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3) 결정일

2025.10.01 (조심2025관0036)

Ⅲ. 조세심판사례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2.5.16. A 와 학생 교육용 항공기 엔진(000, 이하 “쟁점계약물품”이라 한다) 4 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소재 B(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쟁점계약물품 4 대를 수입하면서 화물운송주선인 C 유한회사(이하 “쟁점운송주선인”이라 한다)와 D(이하 “쟁점신고인”라 한다)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였는데, 쟁점운송주선인과 쟁점신고인의 착오로 2023.5.26. 수입신고번호 000 호(이하 “쟁점수입신고서”라 한다)로 쟁점계약물품 중 1 대(이하 “쟁점외물품”이라 한다)만 수입신고되었고, 나머지 3 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수입신고가 누락되었음.

나. 처분청은 2023.8.9.부터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밀수입 혐의를 조사하였으나, 단순 업무 착오로 보아 2024.11.14. 인천지방검찰청에 밀수입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음.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단순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2025.4.18.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 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품의 화주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임에 다툼이 없고, 수입신고서상 쟁점물품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와 납세신고가 누락되었으며, 운송주선인 등은 청구법인의 위임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인 청구법인의 행위로 그 부족세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3) 결정일**

2025.10.01 (조심 2025 관 0054)

Ⅲ. 조세심판사례

**4.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 는 유럽 각지의 A 매장 등(이하 “현지 판매처”라 한다)에서 전체 가격이 000 유로(EUR)를 초과하는 고급 가방·각종 잡화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현지 판매처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자, 총 물품가격이 000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서명한 송품장(Invoice)만으로도 한-EU FTA 협정세율(0%)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B’, ‘C CO., LTD’(이하 “C”라 한다), ‘D’, ‘E’을 해외수출자로 하여, a(배우자 b, 처제 c 포함), d 및 e 이 직접 서명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음.

나. 청구법인은 2020.2.1.부터 2022.12.15.까지 326 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음.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2024.11.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 후, 쟁점물품에 적용된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2024.12.20.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에는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계약 등 거래관계가 없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상 일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하나 이 건 원산지증명서상 서명은 이미지 파일을 반복하여 사용한 것인 등 유효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3) 결정일**

2025.10.02 (조심2025관0041)

### Ⅲ. 조세심판사례

## 5. 쟁점물품(크로마토그래프용 컬럼)을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제 9027.90-9099 호와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인 HSK 제 8421.29-9090 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0.4.1.부터 2024.10.31.까지 중국 또는 일본으로부터 크로마토그래프용 컬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00 호 등 104 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 9027.90-9099 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처분청은 2024.8.2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여과기나 청정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 8421.99-9099 호(기본세율 8%)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9.3.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4.11.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로 보아 HSK 제 8421.29-9090 호(기본세율 8%)로 분류하여 통지하였음.

다. 처분청은 2024.12.9. 청구법인에게 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한 후, 2025.2.5.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품은 액체 시료를 통과시켜 화합물을 분리시키는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HSK 제 8421.99-9099 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3) 결정일

2025.10.15 (조심 2025 관 0052)

### Ⅲ. 조세심판사례

## 6. 쟁점물품(공기정화기의 탈취 필터)을 한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의 기타인 HSK 제 4810.99-9000 호와 광물성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인 HSK 제 6815.99-0000 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2.5.20.부터 2024.1.12.까지 000 소재 A 로부터 공기정화기의 탈취 필터인 DEODORIZATION FIL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000 호 등 39 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 8421.99-9099 호(국제협력관세율 5%, 이하 “제8421호”라 한다) 및 제 4823.90-9090 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 4823 호”라 한다)로 각각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22.6.21.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2.15.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HSK 제 6815.99-0000 호(관세율 8%, 이하 “제 6815 호”라 한다)의 ‘광물성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음. 이에 청구법인은 2023.3.1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12.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이전과 같은 제 6815 호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음.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 6815 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22.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 원을 경정 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품은 펄프 준비과정에서 활성탄·펄프를 혼합하여 만든 흑색계스트랩상 원지를 직선과 물결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이 되게 번갈아 접착하여 구멍을 형성시킨 물품으로 활성탄은 주로 흡착제로 사용되어 충전물로 보기 어렵고 관세율표 제 6815 호에서 그 예시로 필터를 제시하고 있는 등 광물성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인 HSK 제 6815.99-0000 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3) 결정일

2025.10.15 (조심 2025 관 0031)

### Ⅲ. 조세심판사례

## 7.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꺾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 5601.22-0000 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 6307.90-9000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담배 제조·수출 및 판매업, 제조담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000 법인인 A(이하 “A”라고 하고, 청구법인과 A 등 계열사들을 포함하여 “A 그룹”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B 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A 그룹 브랜드의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담배 재료(담뱃잎, 각초 등)와 비담배 재료(꺾련지, 포장지, 필터 등)를 수입함

나. 청구법인은 2020.3.4.부터 2023.7.4.까지 A 그룹의 계열사인 C(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 호 외 103 건으로 꺾련형 담배의 FILTER ROD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방직용(인조) 섬유의 워딩으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 5601.22-0000 호(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음.

다. 처분청은 2022.8.9.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과 유사한 FILTER RODS 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3.11.7. 해당 물품이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HSK 제 6307.90-9000 호(기본세율 10%)에 분류된다고 결정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11.13. 처분청에게 위 결정내용으로 회신하였음.

라. 광주세관장은 2024.11.18.부터 2025.2.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수용하여 2025.2.10.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HSK 제 6307.90-9000 호로 정정하여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였음.

마. 청구법인은 2025.2.26.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방직용(인조) 섬유의 워딩으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는 HSK 제 5601.22-0000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관세 000 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24.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이는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HSK 제 6307.90-9000 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3) 결정일**

2025.10.21 (조심 2025 관 0078)

### Ⅲ. 조세심판사례

## 8.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인은 2024.4.1.부터 2024.4.11.까지 000 소재 'A'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한 신선 생강(소강) 600 톤(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00 호 등 26 건으로 톤당 미화 000 달러(USD)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음.

나. 청구인은 2024.4.11. 및 2024.8.5. 쟁점수출자로부터 신선 생강(대강) 31 톤(이하 "쟁점물품②"라 하고, 쟁점물품①과 쟁점물품②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00 호 등 2 건으로 톤당 미화 000 달러(USD)와 000 달러(USD)로 각각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음.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하여 광주세관장에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광주세관장은 2025.1.15.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 대비 87.37%~88.09% 수준)가 있음을 통보하였음.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 30 조에 따라 그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5.1.21.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000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통상 계약재배의 경우 수확 후 시세 보다 높게 또는 낮게 계약 체결되나 유사물품 대비 저가로만 수입신고되는 등 신고가격 부인대상에 해당함.

### (3) 결정일

2025.10.23 (조심 2025 관 0049)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 자동차 디스플레이 보호용 커버글라스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자동차용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보호용 커버글라스(COVER GLASS); YG PE-K7
물품 설명	차량 계기판 전면에 부착되는 보호용 커버글라스
HS CODE	- 변경 전 : 제 7007.19-1000 호 (기본관세 8%) - 변경 후 : 제 7007.11-1000 호 (기본관세 8%)
변경 사유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강화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제 7007.11-1000 호 분류(2025년 제 6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5.11.13.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2. 시치미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Red pepper mixed with roasted orange peel, black sesame seed, etc.;(상품명: 시치미 토가라시) ② Red pepper powder; SHICHIMITOGARACHI(시치미 토우가라시) ③ Red pepper powder; S&B ASSORTED CHILI PEPPER NANAMITOGARASHI 15g; JAPAN ④ Red pepper powder; ASSORTEDCHILI PEPPER NANAMITOGARASHI 300g; JAPAN
물품 설명	고춧가루에 오렌지껍질 등을 혼합한 소매포장된 혼합조미료
HS CODE	- 변경 전 : 제 0904.22-0000 호 (기본 관세 50%) - 변경 후 : 제 2103.90-9030 호 (기본 관세 8%)
변경 사유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므로 제 2103.90-9030 호에 분류(2025년 제 6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5.11.13.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3. 멸균용 폴리에틸렌 백 등 10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16P0000-0001 ②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16P0000-0003 ③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16P0000-0004 ④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T6P1011-0007) ⑤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T6P1011-0003) ⑥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T6P1011-0008) ⑦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T6P1011-0009 ⑧ Bag of polyethylene ; EZT BAG, HDPE-TYVEK ⑨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 ⑩ Bag of polyethylene; ATMI Clean steam bag
물품 설명	플라스틱 필름과 부직포로 구성된 멸균 포장재
HS CODE	- 변경 전 : 제 3923.21-0000 호 (WTO 협정관세 6.5%) - 변경 후 : 제 6307.90-9000 호 (기본관세 10%)
변경 사유	부직포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제 6307.90-9000 호 분류(2025년 제 6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5.11.13.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수출기업이 미국에서도 신속 통관 혜택 빠짐없이 누리도록 돕는다

-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 전수조사 및 관세국경보호청(CBP) 공유 ...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 강화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 곳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AEO MRA)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을 일제 점검 중이라고 11월 10일(월)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 검사비용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나라에서도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과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 화물이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업체가 수출한 물품임을 상대국 관세 당국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식별정보')가 현지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미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식별정보로 제조자식별부호(MID)를 활용하고 있다.

미 제조자식별부호(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관여 없이 스스로 발행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수입업체별로 서로 다른 제조자식별부호(MID)가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일부 제조자식별부호(MID)를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수출업체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대미 수출기업의 제조자식별부호(MID)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달함으로써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제조자식별부호(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신규 공인받은 업체나 기존 업체가 새로 발급받은 제조자식별부호(MID)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변동 사항은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스템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수출업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식별정보가 상대국 수입신고서에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상대국 수입업체에 올바른 기재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다르며,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번호를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해서 기재하는 경우, △현지 관세 당국 혹은 수입업체·관세사가 발급한 별도의 부호를 기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일부 국가는 △영문 상호 및 주소 등 정보를 직접 인식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같은 정보라도 수입신고서 양식의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국가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한 기재 방법을 모르는 경우 기업상담전문관(AM)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신속 통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장 가운데서도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현황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은 현지 수입업체와의 소통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아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아닌 기업들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취득해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 과정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된 원재료, 환급 허용

-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하여 신청이 원칙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 제증명서 정정·취하 신청,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 정정·취하 신청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가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1.26일~12.16일)에 나선다.

\* 행정예고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a6723dc7b>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엄정한 수출통제 이행을 하면서도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❶ 관세청에 의해 공인된 AEO 기업이 산업통상부가 지정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자격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출하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등 양 인증제\* 간 동일·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를 면제한다.

\* CP기업 : 전략물자 관리 우수기업,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가 지정AEO기업 : 수출입통관 관리 우수기업,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공인

❷ 정상적으로 개별수출허가를 발급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유효기간(1년) 내 수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 美, 日 등 주요국도 유효기간 내 연장 신청 가능

❸ 개별수출허가 등 면제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고의성이 없는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도한 과태료 처분(1천만원 이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자진신고 규정을 신설한다.

\* 수출자는 개별수출허가 등 면제 사유에 해당시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나, 일정 기간 내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

❹ 수출거래 형태의 특성상 전략물자 최종사용자의 건별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간대리점(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❺ 국제사회의 무역안보 규범 이행을 위해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무기 품목\*의 대이란 수출 금지 복원 조치를 반영한다.

\* UN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상(UNRCA) 7대 무기류(탱크, 장갑차, 대구경대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시스템) 등

이번 고시 개정안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경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지정 심사를 간소화하여 산업계의 자율 수출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허가 신청 및 사후 관리 등 관련 부담을 경감하여 수출자의 절차적 편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수출통제의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기업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합리적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규제 합리화

- 코로나19 백신 등 위기단계 해제 의약품에 대한 신속 출하승인 근거 마련-  
 검정 대상 제조번호 임의 선정을 통한 객관성 확보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해제 이후에도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 출하승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출하승인의약  
 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1월 28일 개정  
 ·시행했다.

\* 국가출하승인 제도: 시장에 의약품을 유통하기 전 제조·품질관리 자료 검토  
 및 검정시험 등을 거쳐 식약처장의 출하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제도

\*\*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보툴리눔 제제, 튜  
 베르쿨린 제제 (희귀의약품은 제외)

개정안에 따르면, ❶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약사법」제2조제19호의 국가필수의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제외)의 위해도 단계 재평가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제조단위에 대해 검정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  
 다.

❷또한, 국가출하승인 신청 제조번호의 검정시험 대상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도록 순차적 검정에서 임의 선정방식으로 변경한다.

❸아울러 코로나19 위기상황 해제 시에도 접종일정에 맞춰 코로나19 백신 출  
 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범위에  
 포함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  
 히 하는 한편, 예방접종 시기에 코로나19 백신 등의 신속한 출하승인이 가능  
 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 제도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